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728번

○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 발 의 일 : 2020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 사업 추진에 대한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혁신인재 양성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대관시설, 연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이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시설별 이용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별표).

다. 부대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규정함(안 제8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의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20. 5. 14 ~ 2020. 6.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제8조1항 관련)		
의견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혁신파크 단체협의회	○ 현행조례 제12조에 서울혁신파크의 업무를 위탁받는 서울혁신센터 규정이 존재하므로 제3조 제2항이 신설되면 두 조항이 중첩되어 업무체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 미반영 - 서울혁신센터는 현재 혁신인재 발굴·양성 기능을 별도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바, 향후 민간 위탁 시 센터와 역할이 중첩되지 않도록 운영 예정
	○ 제8조의3 주차료 감면비율 반대 - 해당 조항 신설 시 주차요금이 5년간 3번의 실질적 인상이 이루어짐 - 감면비율 결정 시 입주기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준용 시 조례 개정 취지와 어긋날 우려가 있음	○ 일부반영 - 차 없는 서울혁신파크 조성을 위해 정기권의 수요를 조절하기 위하여 감면비율 조정 필요 - 향후 조례 개정 시 입주기관과 적극적인 소통 추진 - 주차요금 감면비율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준용으로 수정
	○ 서울혁신파크운영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하고, 입주기관의 지원을 개선하는 내용을 마련할 것을 요구	○ 미반영 - 위원회 구성을 위해 서울협치 담당관과 사전 협조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조례 개정시 필요 절차 이행 후 추진

5.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 사업중 사회혁신 인재발굴·양성 및 연구기능을 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 제2항), 서울혁신파크의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부과기준 및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별표, 안 제8조의3).

○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 인재발굴·양성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서울혁신파크의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혁신 활동가들이 모여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도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찾는 혁신적 시민들의 플랫폼으로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활동 단체 운영을 위한 서울혁신센터에게 민간위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서울혁신파크(센터)일반현황

○ **수탁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신나는조합·혁신플랫폼협동조합 컨소시엄**

○ **소 재 지: 서울혁신파크 1동(미래청) 2층**

○ **위탁기간: 2018.4.1. ~ 2020.12.31.**

○ **사 업 비: 7,595백만원** (민간위탁금 7,549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46백만원)

○ **주요역할**

- 혁신기관 연계·조정(coordinating) 중심 조직
- 민간 혁신 역량 지원과 협업을 통한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

○ **주요업무**

- 서울혁신파크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혁신관련 시설 운영
- 서울혁신파크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서울혁신파크 내 입주기관 협업 및 협력
- 사회혁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서울혁신파크 조감도】

나. 세부 내용 검토

1)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 신설 (안 제3조제2항)

○ 현행 조례 제3조에서 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하고, 제12조에서는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신 설〉	제3조(기능) ① ---------- ---------- 1. ~ 6.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지도·감독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기능) 서울혁신파크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 도출
2.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
3. **혁신인재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혁신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
5. 사회혁신 성과에 대한 모델의 국내·외 확산
6. 사회혁신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 제공 등

「서울특별시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혁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혁신기획관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혁신파크를 물리적 공간으로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 및 사회혁신 연구기능을 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가칭)'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사업은 사회혁신 교육 과정 및 네트워크 운영으로 혁신가(학생, 기업, 민간, 공무원 등)의 양성하고, 교류와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0년에는 중장기 종합계획을 위한 학술용역과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를 시범운영(사회혁신가 30명)하였으며, 2021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과정명: 미래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캠퍼스「서울혁신펠로우 과정」**

○ **주 제: 함께 그리는 미래 2050 프로젝트 '미리 가본 내일의 도시 - 기후위기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 **운영기간: '20.11. 7.~12.12.**(6주간) **/ 매주 토요일 10시~17시**

○ **운영장소: 서울혁신파크 상상청**(온·오프라인 병행)

○ **대 상: 현장에서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경험과 사례가 있는 사회혁신가 33명**(분야별 멘토 8명, 혁신리더 16명, 청년 9명)

▸ 분야: '기후위기'로 달라질 먹거리, 주거, 여가, 일자리, 돌봄, 안전 등

☐ 세부 프로그램

주 차	주요 강의 내용
1주 (11. 7.)	**지금 미래를 함께 그리는 것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한가** ① 개회식 ② 미래 디자인의 중요성 ③ 팀프러너십 소개 ④ 시스템 사고 이해 등
2주 (11.14.)	**전환을 위한 관점의 전환** ① 복잡한 시스템 관계와 영향력 ② 몸을 통한 이해 ③ 팀의 정체성과 목표 설정 등
3주 (11.21.)	**지금 도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① 시스템 사고를 통한 도시 전환 해결 사례 ② 시스템 매핑(기후위기에 따른 도시 문제의 구조적 분석) ③ 팀코칭 - 문제의 관계탐구 등
4주 (11.28.)	**2050 서울의 미래를 상상하기** ① 미래미전 기반 시나리오 개발 ② 시나리오 공유회 ③ 시나리오 개발 및 시나리오 목록 코칭 등
5주 (12. 5.)	**2050 서울의 미래를 함께 그리기** ① 시나리오 및 목록 완성 ② 프로젝트 과정 및 팀 성찰 등
6주 (12.12.)	**이미 도래한 미래** ① 도시의 미래 시나리오와 전략 공유회 ② 360도 피드백 기법을 통한 개인, 팀, 프로젝트 성찰 ③ 수료식 등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이용의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서울혁신파크의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관계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동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14조(사용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추진배경

○ 서울혁신파크를 물리적 공간으로 사회혁신 인재 발굴·양성 및 사회혁신 연구기능을 하는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가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혁신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민간위탁 근거 마련

※ 2020년 하반기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 운영, 2021년 본격 추진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중장기 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중('20. 3~)

○ 사용료와 별개로 이용료 부과·징수·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료와 이용료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료 조항을 대관료의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용료 부과·징수 근거조항 필요

○ 이용료 감면 근거 및 감면비율 마련

- 이용료 감면 대상과 범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료 감면을 시행하여 서울혁신파크 시설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04,000	169,000	157,280	△11,720	△7
사무관리비	134,000	99,000	157,280	58,280	59
연구용역비	70,000	70,000	0	△70,000	△100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시범 운영 = 72,000천원 - 시범과정 기획 및 설계 40,000,000*1회 = 40,000천원 - 홍보비 = 2,700천원 - 현장학습운영비 130,000원*3일*30명 = 11,700천원 - 국내 교수 강연비 300,000원*16일*2회 = 9,600천원 - 강의 자료 제작 및 인쇄 100,000원*30명 = 3,000천원 - 결과발표회 5,000,000원*1회 = 5,000천원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네트워크 운영 = 27,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등 150,000원*30명*6회 = 27,000천원 ○ 해외혁신기관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35,000천원*1회 = 35,000천원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운영(연2회)= 123,280천원 - 교육과정 운영 30,000,000*2회 = 60,000천원 - 전문 강사비 = 23,040천원 ▷ 시민혁신가 과정 360,000원*16회*2 = 11,520천원 ▷ 서울혁신펠로우 과정 360,000원*2명*8회*2 = 11,520천원 - 보조 강사비 = 10,240천원 ▷ 시민혁신가 과정 40,000원*2시간*2명*16회*2 = 5,120천원 ▷ 서울혁신펠로우 과정 40,000원*4시간*2명*8회*2 = 5,120천원 - 재료비(강의자료 등) 40,000원*250명 = 10,000천원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운영성과 공유 10,000,000원*2회= 20,000천원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홍보 8,000,000원*2회= 16,000천원 ○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자문 150,000원*10명*12회 = 18,000천원
연구용역비	○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학술용역 70,000천원*1회 = 70,000천원	
	증감사유	
	o 2020년 글로벌 사회혁신 오픈 캠퍼스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완료('20.11.)에 따른 연구용역비 미편성	

○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의 각호의 기능 일부 사무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려는 것이 기존규정과 신설규정이 충돌되는지 여부와 적용상 혼선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혁신인재 발굴·양성 및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별도의 민간위탁과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서울혁신센터와 역할 및 기능과 중복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특히, 시범사업의 효과성 및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심사시 운영상 우려에 대한 개선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0년 서울혁신기획관 예산심사시 검토의견〕

○ 첫째, 동 사업은 소수의 혁신가 30명을 대상으로 하나,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시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할지에 대한 공정성의 문제
○ 둘째, 30명 모집을 위한 낭비성 행정 비용 및 절차의 문제와
○ 셋째, 소수만을 위한 사업이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심각한 소외감 및 알음알음 제식구 나눠먹기식 선정에 대한 우려,
○ 넷째, 서울시의 예산은 일반시민 모두의 세금으로 편성된 것임에도 극소수의 혁신가를 위한 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집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사용료의 조명 개정(안제6조제1항) 및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신설(안제8조의2)

○ 안 제6조 제1항은 조 제목을 '사용료'에서 "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로 변경하고, 주어인 '시장'을 추가하는 한편,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을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안 제8조의2는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서울혁신기획관은 사용료 부과는 입주시설에 한해서 부과하고, 그 밖에 부대시설(대관시설, 연수시설, 부설주차장 등)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① **서울혁신파크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신 설〉**	제6조(**입주시설에 대한 사용료**) ① **시장은 서울혁신파크 내의 입주시설에 대한** ----------. **제8조의2(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시장은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시설별 이용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현재 서울혁신파크 일부 시설(대관시설, 주차장, 연수시설)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혁신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용료 부과징수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입장임.

○ 또한, 서울혁신파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설별 이용료를 게시하도록 한 것은 투명한 부과·징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서울혁신파크 내 게시판 등 공개형태를 다양화하고, 홈페이지내 정보 접근의 강화를 위한 편의성 제공에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행정재산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였을 때 사용료를 징수하고 세입처리를 하는 반면,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탁기관이 부대시설 운영에 대해 사용료가 아닌 이용료를 받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 현행 조례 제6조(사용료)에 따라 서울혁신파크(은평구 통일로 684 일대 건물 및 부지, 행정재산) 내 시설은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 제7조에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하는 혁신 기관, 단체, 기업에 대해서는 법령·조례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료 감면과 같이 이용료 감면 비율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감면비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혁신파크 이용료 부과기준 (제8조의2 관련)

구분		단위	기준금액(원)	비고
1.대관시설 (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시설)	가. 실내	1㎡ 당/ 1시간당	200~300	○ 이용 시간 - 월~목 : 09:00 ~ 22:00 - 금~토 : 09:00 ~ 17:00 ※공휴일·대체공휴일은 대관하지 않음. ○ 시청각 장비 사용료 별도
	나. 야외	1㎡ 당/ 1시간당	10~20	
2. 연수시설	가. 1~2인실	1박당	40,000~50,000	○ 숙박 예약 시, 이용일 이전 3일 전(토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나. 4인실	1박당	80,000~100,000	
	다. 5인실 이상	1박당	120,000~150,000	
3. 부설주차장		○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2급지 기준을 적용		○ 10분 이내 회차 시 무료(택배, 우편차량에 한하여 30분 주차요금 면제)

○ 둘째, 연수시설의 대관료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다른시설에 비해 대관료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와 서울혁신파크 설립 운영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참고자료).

○ 셋째, 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대관시설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대관하지 않고 있는 바, 관리자의 편의에 기인한 이용자의 입장이 미반영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강당 및 회의실 등 대관시설의 취소에 따른 이용료 반환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바, 분쟁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혁신파크 이용산정기준〕

① 대관시설 (실내)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상 이용료 범위 별표2의 강의실 대관료(1시간, 100㎡ 당 2만원~3만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1㎡ 당 200원 산출
- ▸ 혁신파크 내 대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 당 약 250원(1시간), 청년허브는 1㎡ 당 약 300원(1시간)을 부과 중
- ▸ 현재 실내 대관시설은 1㎡ 당 250원을 적용하여 이용료 부과 중

② 대관 시설 (실외)
- ▸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별표에서 정하는 야외 대관 공간 이용료(1시간 당, 1㎡ 당 10~20원)의 규정 참고
- ▸ 현재 실외 대관시설은 1㎡ 당 10원을 적용하여 이용료 부과 중

③ 연수 시설
- ▸ 서울유스호스텔과 기타 연수시설의 숙박료를 참고하여 책정
- ▸ 현재 1박 당 1~2인실은 4만원, 4인실은 8만원, 다인실은 12만원 징수 중

④ 주차장
- ▸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2급지 기준을 적용
- ▸ 현재 2급지의 요금 기준을 적용 중

4)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신설(안제8조의3)

○ 안 제8조의3은 서울혁신파크에 설치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중 일정한 조건의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이용료의 감면)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관시설(강당, 회의실 및 그 밖의 옥내·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연수시설: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함.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이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2. 부설주차장: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하되, 감면 사유가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가. 서울특별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을 공무 수행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면제 나.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에서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를 준용하여 감면함.

○ 동 조항은 이용료에 대한 부과 근거 조항 신설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시행을 위한 감면 대상과 비율을 후속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서울시의회 법률자문의뢰결과, 사용료와 이용료 부과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용료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사용료와는 다르게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이를 감안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 분			자문내용
① **사용료와 이용료 차이** 및 ② **민간위탁을 받은 자가 행정재산에 대해 이용료를 징수하면서 법령의 근거 없이 개별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문 1 (긍정)	사용료	- 공유재산법상 사용료는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징수 금액 ⇒ 법률에서 정한 사용료를 책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이용료	- 수탁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자문 2 (긍정)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 **이용료는 최종 결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조례에서 징수 가능**
	자문 3 (긍정)	사용료	-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 공유재산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징수가능
		이용료	-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으면 충분하므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은 아님.**

○ 다만, 안 제8조의3과 같이 서울혁신파크에 입주한 혁신기관, 단체, 기업이 대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은 아닌지 여부와 사용료 감면비율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주차장 감면비율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를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혁신기획관은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바(제2조의2), 공유재산 중 주차장에 관해서는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및 그 위임 사항(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등)을 정하고 있는 주차장조례에 따른 것이며, 서울혁신파크의 설립 취지에 따라 주차장 감면 준용 조항을 정했다는 의견을 개진함.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

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9.「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김 정 덕

참 고 자 료 **서울혁신파크 부대시설 운영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대관시설은 서울혁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시민 대관 공간은 총 8곳이 운영 중임

- 회의실, 강당, 오픈주방, 야외공간(광장) 등

○ 연수시설(연수동)은 숙박시설 운영 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약을 받고 이용료를 징수 중임

- 객실 수 : 총 21개(1인실 4개, 2인실 14개, 4인실 2개, 다인실1개)

○ 부설주차장은 총 370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현재 서울시주차장조례 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있음

- 한 달 정기권(18만원), 일일권(3만원), 5분 당 250원

○ 부대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서울혁신센터가 부과·징수하고, 이용료 수입은 모두 세외수입으로 처리됨

□ 서울혁신파크 부대시설 운영 실적

○ 대관 시설 운영 실적

연번	대관공간명	집계기간	월평균 대관 횟수	월평균 이용인원(명)
1	모두모임방1	2017년 06월~2019년 08월	12	394
2	상상의 숲	2018년 04월~2019년 12월	22	1,159
3	전시체험	2018년 04월~2019년 12월	7	967
4	느티나무홀	2018년 04월~2019년 12월		693
5	다목적홀	2018년 04월~2019년 12월	20	1,303
6	맛동(오픈주방)	2017년 03월~2019년 12월	31	1,552
7	혁신광장	2016년 03월~2019년 08월	5	7,058
8	피아노숲	2016년 03월~2019년 08월		3,052
월 평균				2,022명

※ 코로나19로 인해 '20.2월 이후 대시민 대관공간을 운영하지 않음

○ 연수동 운영실적

- 2019년도 운영실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점유율 (%)	16	20	22	58	46	35	41	27	21	43	33	19	31.8%
이용자수 (명)	203	246	190	157	94	112	239	302	212	198	255	100	192
이용건수 (건)	16	14	20	8	8	10	24	19	18	17	19	14	16

- '20. 2. 24.~.4. 15. : 코로나 19로 인한 임시 휴관

- '20. 4. 16.~ 9. 25. : 은평구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 운영

○ '20년 부설주차장 운영실적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평균
입차 (일평균)	380	389	340	385	401	413	428	384	417	393
정기권 (등록대수)	157	146	151	152	152	144	141	139	138	146
계	537	535	491	538	552	557	569	523	555	539

이용료 관련 타 조례 참고 자료

조례명	이용료 범위	감면 규정	감면 범위	비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예시: 회의실, 5,000~50,000)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성플라자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시의 직접사용 혹은 비영리민간단체 이용 시 100분의 50 숙박시설의 경우 100분의 20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10%할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 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없음	③ 시장은 운수종사자 및 그 직계가족의 이용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이용료의 50% 범위안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100분의 50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10%할인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및 규모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전시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면 대상: 국빈, 외교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노인, 장애인 등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② 시장은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를 별표 2의 범위안에서 정하여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예시: 비박, 1일 50,000원 이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둥이 행복카드(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를 소지한 청소년이 서울영어 및 창의마을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본인 부담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면제 혹은 100분의 50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5%할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예시: 강의실, 100㎡ 당, 1시간 당, 2만원~3만원	없음		

조례명	이용료 범위	감면 규정	감면 범위	비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면 대상: 국빈, 외교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노인, 장애인 등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예시: 강연홀, 1시간 기준 9,100원~12,000원 1일사용 시 91,000원~120,000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10%할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시: 1회 3시간 사용료(200석이내 25만원, 300이내 35만원) 시간초과 시 시간 당 00원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노인, 장애인 등	소상공인 간편결재 시스템 10%할인